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9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소병훈·고영인·권칠승

문진석 • 전혜숙 • 인재근

양정숙・노웅래・서영교

최종윤 · 김회재 · 김남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,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,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대로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 정이므로, 도시철도의 건설 촉진 및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이 법에도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보·교육 및 연구,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·피해에 대한 신속·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1.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·교육 및 연구
- 2.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
- 3.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·공정한 구제조치
- 4.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도시철도 이용자의 권
	익보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
	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
	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	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	1.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
	를 위한 홍보·교육 및 연구
	2.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·신
	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
	3.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
	<u>피해에 대한 신속·공정한 구</u>
	<u>제조치</u>
	4.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
	호와 관련된 사항